

2023년 4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UN장애인 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

## 주 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포럼(KDF)

## 식 순

사회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단체

발제 : 김기룡 (지표개발연대 단장)

토론 : 최승철 (전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유경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기획팀 팀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예지 / 국회의원 장혜영 / 국회의원 최혜영 /  
국가인권위원회 /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시단법인  
전국장애인이학협의회 / 시단법인두루 / 장애외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국권리중심증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 한국피플퍼스트



2023년 4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UN 장애인 권리협약 최종 견해 이행 지표 개발 토론회

## 주 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포럼(KDF)

## 식 순

사회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단체  
발제 : 김기룡 (지표개발연대 단장)  
토론 : 최승철 (전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유경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기획팀 팀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예지 / 국회의원 장혜영 / 국회의원 최혜영 /  
국가인권위원회 /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지인권위원회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학협의회 / 사단법인두루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 한국피플퍼스트



# 목차

## ■ 인사말

- ◎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08
-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
-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12
- ◎ 김영일 고선순 진건 최공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일동) .....14
-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16
- ◎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18

## ■ 발제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지표연대 단장.....21

## ■ 토론

- ◎ 최승철 박사(전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 .....37
- ◎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47
- ◎ 유경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기획팀 팀장 .....53
- ◎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 .....59

## ■ 참고자료

- ◎ UN CRPD 한국 2, 3차 최종견해 (국문 / 영문) .....61



인사말

##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환영의인사를 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장애포럼(KDF),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신 김기룡 교수님과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최승철 박사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김정학 과장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유경민 팀장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기전 서기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의 염원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비준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14년 만에야 이루어진 정말로 뜻깊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선택의정서 비준이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개인 진정제도’와 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은 소요기간이나 언어적.법률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지원 없이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협약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를 발표하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 장애인들이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

##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에 오신 내·외빈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주최해주신 김예지, 장혜영 의원님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연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을 할애해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발표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또는 개선하라는 권고들이 이어졌으나, 실질적인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결과 역시 지난 1차 한국정부 심의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이 유사하게 반복된 것을 미루어보아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음 심의까지 장기간 지적사항 이행이 표류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최종견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이행 계획을 살펴보는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상황 점검 지표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공과 학계, 장애계 등이 공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물론 시민사회와 연구자, 장애인 당사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최종견해가 실현, 반영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논의된 사항이 실제 정부 정책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는 한편 입법과 예산으로 도울 부분이 있다면 힘껏 힘을 신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결과가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 가능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첫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6조를 통해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에 아로새겨진 원칙에도 불구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을 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는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2014년 UN의 심의를 받았던 1차 국가보고서와 그리고 지난해 심의가 이뤄진 2·3차 국가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및 ‘탈시설’ 등 핵심과제와 관련해 협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의 최종견해와 지난해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의 최종견해가 사실상 유사한 내용을 지적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선택 의정서 비준’이 이뤄졌습니다. 협약 비준 이후 무려 14년만의 일로서, 협약 위반에 대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처럼,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협약 이행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제라도 UN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국내 이행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 이행에 대한 UN의 최종견해가 똑같이 반복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최종견해의 내용이 국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한 17개 시민사회단체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를 발족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논의하시고 개발해주신 지표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보고서 작성은 줄곧 있어왔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정부의 협약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은 협약의 완전한 국내 이행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주관하신 한국장애포럼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장애계와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주신 김기룡 교수님과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최승철 부장님, 조은영 조서관님, 유경민 팀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해주신 이행 지표와 소중한 검토 의견들을 바탕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국내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저와 정의당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따스하고 봄기운이 만연한 4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토론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론회 준비에 함께해주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님, 한국장애포럼 대표님과  
공동주최에 함께하신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여러 장애인단체 임직원 여러분들  
께 감사를 전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 좌장 맡아주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님, 발제를 맡아주신 김기룡 단장님과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작년 여름,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받았습니다.  
8년만에 이뤄진 심의이며, 의미있는 최종견해를 손에 쥔 것도 뜻깊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가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로 연대했다는 사실에 큰 자긍심과 기쁨을 느낍니다.

최종견해를 손에 쥔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연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견해를 올바르게 이행하도록 모니터하기 위합니다.  
오늘의 지표개발 토론회를 시작으로 장애인단체는 힘을 모아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이행되어 국내외 장애인의 권리가 보호, 보장, 증진될 수 있도  
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역시 장애인단체로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일동  
김영일 고선순 진건 최공열

## 인사말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최종견해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지표의 의미를 이해해주시고, 토론회를 함께 마련해주신 김예지, 최혜영, 장혜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주신 단체들에도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2,3차 병합 최종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의 당시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가 규정한 주거선택권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안에는 탈시설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탈시설 시범사업에서는 ‘탈시설’이라는 용어까지 삭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년 간 유예되어온 장애인 권리를 이제는 제발 보장하라고 외치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은 한국이 무려 15년 전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그리고 헌법을 통해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시민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말잔치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장애인을 더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할 주체로 선언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종견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지표 개발은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장애계는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천명된 인권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최종견해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지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관심도 함께 모아길 바랍니다. 한국이 몸집만 커지는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내실있게 성장해 가는 길을 장애인 당사자와 연대자들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윤종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귀빈 여러분, 공동주최로 뜻 모아주시는  
의원님들, 무엇보다 지표개발단을 이끌어주신 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를 발표하는 오늘 이 자리를 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담은 전 세계인의 약속이자, 대한민국 헌법에도 준수 의무가  
명시된 중 대한 인권 규범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이라면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한국이 받은 2,3차 최종견해는  
한국 사회 장애인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통합 교육 실현,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등은 2014년 1차 최종견해와 2, 3차 최종 견해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10년여간의 시간 동안,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다음 최종견해에서도 반복해서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점검과 이행 촉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 규범의 가치 기반 규범 서술인 인권  
기준과 원칙을 실제 적이고 실행 가능한 메시지로 전환하여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이 규범 이행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며 인권 지표 제작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종견해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장애인 정책을 국제 규범에 부합하게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전 세계적 선례를 마련한 지표개발단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한국장애포럼은 앞으로도 단단한 국제 연대를 확장하고,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4일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윤종술



## **[발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지표연대 단장**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2023. 4. 14.

지표개발단: 김기룡(중부대학교), 김동호·김소영(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연운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민주(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재민(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김수원(한국피플퍼스트), 우정규(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학인(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주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다혜(사단법인 두루), 최용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지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미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한별·정혜란(한국장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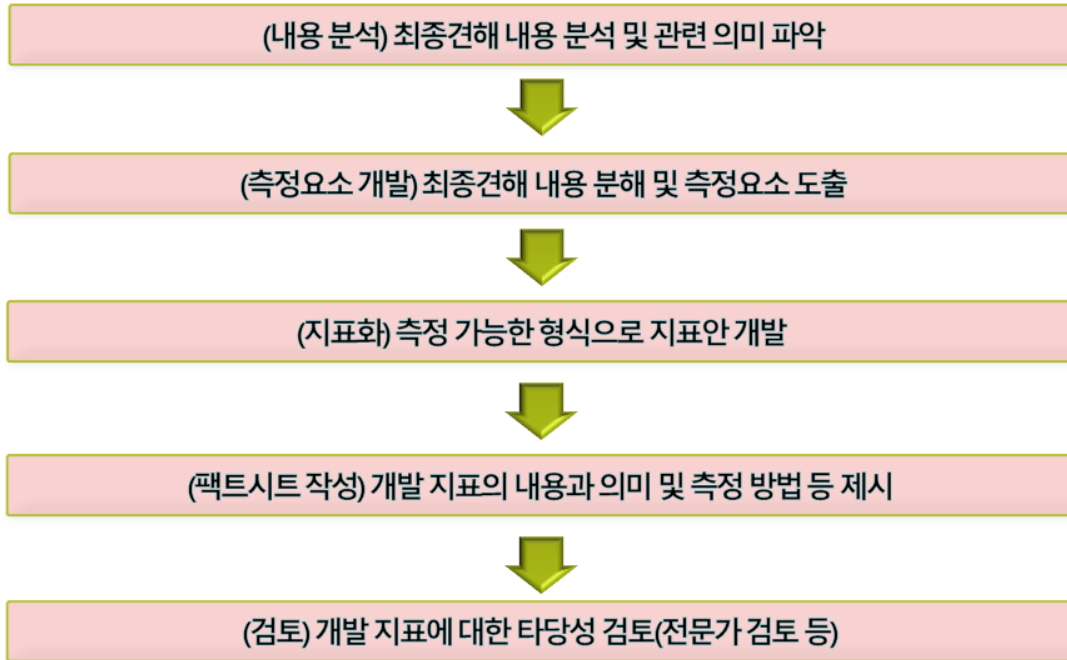
### 1.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방법

#### 1) 개발 원칙

-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개발하였음
  - 타당성의 원칙: 최종견해 내용에 부합하는 지표인가?
    - 최종견해의 배경, 의도 및 주요 내용 등을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표로 개발
    - 최종견해 관련 해당 조항의 내용을 반영한 지표로 개발
  - 측정 가능성의 원칙: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지표인가?
    - 가급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지표로 구성하고, 해당 측정요소를 알아볼 수 있는 정량 지표를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례 수집 등 주관적 지표 제시
  - 실효성의 원칙: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최종견해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지표인가?
    - 최종견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효과적인 지표로 개발
    - 최종견해의 이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 이행에 필요한 후속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

## 2) 개발 절차

-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발하였음



[그림]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절차

- 첫째, 내용분석 단계에서는 최종견해의 내용과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등 핵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 둘째, 측정요소 개발 단계에서는 최종견해 내용 중 지표를 통해 측정할 필요가 있거나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을 측정요소로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 셋째, 지표화 단계에서는 핵심내용과 측정요소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실효성, 측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안을 도출하였음
- 넷째, 팩트시트 작성 단계에서는 개발 지표의 내용과 의미 및 측정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 다섯째, 개발된 지표안과 팩트시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 3) 개발 형식

- 최종견해 이행 지표는 지표별 팩트시트와 최종견해 내용별 개발 지표 리스트로 각각 개발, 정리 하였음
- 지표별 팩트시트의 형식은 다음과 같음

항목	내용
지표명	<b>6-1.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회적 장애 개념 반영 여부</b>
지표 근거	협약 또는 일반논평 관련 근거 조항명
	일반원칙 및 의무(제1~4조)
	최종견해 내용 전문 (a) 국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에 따라 검토하고, 특히 심리사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
지표 핵심 내용	(권고별 측정요소(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및 개정
지표 정의	(제안하는 지표의 개념 설명) ○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개념을 사회적 개념으로 채택,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지표 산출방법 (측정방법)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 지표의 값/내용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절차 제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에 사회적 개념을 포함하여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
관련 지표	(최종권고 내용 중 유사하거나 관련된 지표가 있을 경우 해당 지표 번호 제시)
비고	(아래와 같은 사항 제시 가능) ○ 지표 개발 과정에서 참고하였거나, 참고할만한 자료명 제시 ○ 지표 측정(산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 ○ 그 외 지표 개발 과정에서 검토/고민되었던 내용이 있다면 간략히 제시

- 최종견해 내용에 따른 개발 지표 리스트는 최종견해 전문, 최종견해 핵심내용, 지표안, 지표 정의, 산출방법, 평가방법, 지표형식 및 소관부처 순으로 각각 제시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로 대체함



### 3.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 1) 개요

- 73개 번호로 구성된 최종견해 중 우려, 제언, 일반적 사항 등을 제시한 37개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포함된 36개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였음
- 36개 최종견해의 핵심내용 및 측정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견해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장애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지표안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48개의 지표를 개발하였음
- 148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128개의 핵심지표와 20개의 보충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핵심지표는 최종견해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최종견해 이행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하며, 보충지표는 최종견해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의미함
- 148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49개의 정량지표와 99개의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량지표는 수량화된 정보를 통해 숫자, 비율, 값 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수치화된 평가 준거를 통해 이행, 부분이행 또는 미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하고, 정성지표는 해당 최종견해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질적 자료 또는 현황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행, 부분이행 또는 미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된 지표를 말함
- 148개의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모두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그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지표이므로, 각 지표가 어떤 부처 소관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였음.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지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56개), 그 다음으로 법무부(21개), 고용노동부(11개), 행정안전부·교육부(10개), 여성가족부(9개), 국토교통부(7개), 문화체육관광부(5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3개)로 나타났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5개),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3개)가 담당해야 할 지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2) 개발 결과

- 개발된 최종견해 이행지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에 따른 이행지표 개발 결과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지표 유형	소관 부처
6	6-a-1.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회적 장애 개념 반영 여부	·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장애개념을 사회적 개념으로 채택,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 복지부
	6-a-2. 미등록 장애인을 위한 법률과 정책 마련 여부	· 미등록 장애인(ex: 시청각 장애인 등)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는 법률, 정책,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수립하여 다양한 장애의 개념을 인정하여, 등록 유무를 기준으로 장애를 한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장애의 개념을 인정하고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보충	보건 복지부
	6-b-1.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ICF에 근거하여 환경적 맥락속에서 장애를 파악하는 질문 비율	· 장애판정제도가 ICF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 복지부
	6-b-2.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에서 사회 환경적 맥락을 파악하는 질문 비율	·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가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 복지부
	6-c-1. 관련 전문직군의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수 비율	·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료, 보건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직군이 협약상의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 복지부
	6-c-2.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평가 시스템 마련 여부	·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에 협약상의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보건 복지부
8	8-1. 선택의정서 비준 여부	·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10	10-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연령, 성, 정체성, 장애유형, 이주장애인 등 다양성 고려 정도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 구성 시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 등 장애 유형· 정체성· 단체 유형 등을 고려한 모든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 복지부
12	12-a-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여부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금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 복지부
	12-a-2.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 관련 차별 사항을 반영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12-a-3. 장애인이 직면하는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 종식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 수립 여부	·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 차별 종식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 복지부
	12-b-2. 심리사회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수립 여부	·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국가 수준의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 복지부
	12-c-1.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 패소 장애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및 변제 시스템 마련 등 공정한 보상 제도 실시 여부	· 국내 소송비용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이 상대방 변호사 보수 부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소송비용 또는 변제 지원 관련 방안, 원칙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12-d-1. 국내 법령에 따른 정당한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와 장애인권	핵심	보건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지표 유형	소관 부처
	편의와 협약에 근거한 합리적 조정 간 일치 여부	리협약 및 일반논평 제6호에 따른 합리적 조정 간 일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복지부
	12-d-2.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 마련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 차별 시정 기구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 사건 발생시 적용되고 있는 조사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 별도의 효과적 조사 증거 마련 필요	핵심	국가인권위원회
14	14-a-1. 국내 젠더 관련 정책 내 장애여성·소녀 권리 보장 내용 포함 여부	·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8) 등 국내 젠더 관련 정책 내 장애여성·소녀를 포함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 보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여성가족부
	14-a-2. 국내 장애 관련 정책 내 장애여성·소녀 권리 보장 내용 포함 여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8) 등 국내 대표적 장애 정책 내 장애여성·소녀를 포함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 보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14-a-3. 젠더 관련 법률 중 장애여성·소녀 권리 보장 내용 반영 비율	· 국내 젠더 관련 법률이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여성가족부
	14-a-4. 젠더 또는 장애 관련 협의체 내 장애여성·소녀 참여 비율	· 국내 젠더 또는 장애 관련 대표적 협의체(양성평등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내 장애여성·소녀 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14-b-1. 국가 수준 장애 정책 내 성인지 계획 및 예산 반영 여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등 국가 수준 장애인 정책 내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정책 과제 수립 및 예산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14-c-1.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 차별 관련 법령 내 장애여성·소녀 차별 금지 조항 반영 여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장애 관련 법령에서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14-c-2.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여부	·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시정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 방향 수립, 관련 정책 내 반영 여부, 별도의 국가 전략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14-d-1. 주요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 도입 여부	·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및 각 정당의 해당 후보자 선출시 장애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	16-a-1.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 참여권 관련 사항 규정 여부	·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장애아동 관련 법령 내 장애아동의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16-a-2.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장애아동 참여 보장 근거 마련 여부	·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 아동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협의체, 위원회 또는 기구 내 장애아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16-b-1. 국가 수준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	· 아동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등 국가 수준의 지역 사회 복지 정책 내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17-c-1. 통합놀이터 설치 등 장애아동의 놀이터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여부	·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아동의 접근권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행정안전부
18	18-a-1. 장애인 인식 제고 및 편견	· 장애인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장애인의 인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지표 유형	소관 부처
	대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여부	식 제고와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부
	18-a-1.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비율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20	20-a-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관련 법령에서 건축물 내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마련 여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 관련 법령에 건축물 규모, 수용 가능 범위,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20-b-1. 국가 접근성 전략 채택 여부	· 접근성 관련 협약의 각 조항(제5조 ~ 30조) 내용을 포함한 국가접근성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20-c-1.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확보 비율	·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의 휠체어 이용 가능 저상버스 도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국토교통부
	20-c-2.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버스 정보를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국토교통부
	20-c-3. 휠체어로 탑승 가능한 버스 정류장 정보 제공 여부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 휠체어로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국토교통부
	20-c-4. 음성 및 읽기 쉬운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 수립 여부	· 음성, 수화 및 읽기 쉬운 표시 등 장애인의 교통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국토교통부
	20-c-5. 휠체어 이용 등 모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터미널 환경 조성 여부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 등의 버스 정류장 및 터미널이 휠체어로 탑승이 가능한 환경(이동편의시설 등 확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국토교통부
	20-d-1. 교육시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 보급 비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장애인이 원하는 형태의 디지털기기 지원 비율 포함)	핵심	교육부
	20-d-1. 각급학교의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장애를 고려한 편의제공 지원 근거 마련 여부	·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업에 사용하는 영상물이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어 통역 등 장애를 고려한 편의지원을 포함하여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교육부
20-d-2. 가정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디지털 기기(프로그래밍 포함) 보급 비율	· 가정 내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디지털 기기 보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핵심	방송통신위원회	
22	22-a-1. 자폐성장아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	· 자폐성장아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22-a-2. 자폐성장아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	· 자폐성장아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22-a-3.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	· 부모 등 가족의 장애인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정책 및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22-a-4. 관련 정책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수렴 등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 여부	· 자폐성장아인, 심리사회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수렴 등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22-b-1. 감염병, 재난 등 위험상황에서의 긴급 탈시설 조치 계획	· 감염병, 재난 등의 위험 상황 대응 매뉴얼이 장애인 생명권 보호를 위한 긴급탈시설 조치를 포함하고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지표 유형	소관 부처
	택 여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22-b-2. 긴급 탈시설 조치 계획, 이행, 모니터링에서 장애인단체 및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과의 협의 여부	· 감염병, 재난 등의 위험 상황에서의 긴급 탈시설 조치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및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협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24	24-a. 재난위험경감계획 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내용 포함 여부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재난 위험 상황을 경감시키기 위한 계획에 장애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행정안전부
	24-b. 재난위험경감 및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참여 여부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국가 및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장애인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행정안전부·환경부
26	26-a.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 내 장애인 지원 관련 내용 포함 여부	·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26-b-1.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여부	· 긴급상황에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26-c.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 개발·이행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 근거 마련 여부	·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 개발·이행 과정에서의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 근거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26-d. 위기상황 및 긴급사태 발생 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원 체계 구축 여부	· 위기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를 적절한 기기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28	28-a-1.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 여부	· 장애 관련 정책(계획)과 민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법무부
	28-a-2.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	· 장애인에 대한 특정후견,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중 성년후견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법무부
	28-b. 의사결정지원 제도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이행 및 법령 제·개정 과정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후견제도 등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행 및 법 제·개정 과정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28-c. 장애인에게 접근가능한 형태(점자, 수어, 읽기 쉬운 형태 등)로 지원의사결정 관련 정보 제공 여부	· 지원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게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30	30-a-1.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 수립 여부	·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30-a-2. 장애인의 사법 절차에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령, 정책의 존재 유무	·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 관련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30-b-1. 다양한 법적 절차에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별화된 지원 체계 구축 여부	· 장애인의 법적 절차 참여 과정에서 장애인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 등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30-c-1.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핵심	법무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지표 유형	소관 부처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 마련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여부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30-c-2. 모든 법정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초한 물리적 접근성 보장 계획 수립 여부	· 모든 법정시설을 장애인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접근성 관련 구체적인 이행계획(정책, 지침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30-d-1. 법관 및 사법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근거 마련 여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인), 교정직 공무원)에게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30-d-2. 법관 및 사법 종사자의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관련 교육 이수율	· 법관과 사법 종사자(경찰, 검찰, 국선변호사(인), 교정직 공무원) 중 장애인 사법접근권에 관한 교육을 실제 이수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법무부
	30-e-1. 법학적성시험(LEET) 및 변호사시험 장애인응시자 중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 경험 비율	· 법학적성시험(LEET),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중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요구한 정당한 편의에 대해 제공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법무부
	30-e-2.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 제도를 실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율	·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개별화된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32	32-a-1. 장애인 비자의적 자유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모든 관련 법률 조항 폐지 여부	· 장애인 비자의적 자유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모든 관련 법률 조항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32-a-2.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비차별적 법률 마련 여부	· 장애인 심문 및 구금 시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 편의 제공 사항이 반영된 비차별적 법률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32-a-3. 장애인의 비자의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비율	· 비자의적으로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입원한 장애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보건복지부
	32-b-1. 심리사회적 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	· 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 등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	핵심	법무부
	32-b-1. 격리치료시설 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격리치료자 비율	· 격리치료시설 내 장애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법무부
	34-a. 모든 환경에서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장애인 보호 및 예방 조치 채택 여부	·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 등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34-b-1.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진정 절차 마련 여부	· 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진정 절차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34-b-2.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시설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34-b-3. 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거주인이 진정한 사건의 비율	· 시설 내 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직접 진정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보건복지부	
36	36-a. 장애인 학대피해 생존자의 재활 및 배보상을 포함한 포괄적 학대 예방 전략 수립 여부	· 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과 배보상 구제방안을 포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36-b-1.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 시설 내외 장애아동 폭력 및 학대근절 계획을 채택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지표 유형	소관 부처
	및 학대 근절 행동계획 수립 여부	· 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부
	36-b-2.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마련 여부	·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분리 통계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36-c-1. 젠더 기반 폭력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및 센터를 포함하여 별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여성가족부
	36-c-2.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지원 센터 수	·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고려한 지원센터 또는 센터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여성가족부
	36-d.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이수 비율	· 장애당사자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를 인식하고 장애인과 의사소통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38	38.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근절 조치 및 보상 계획 수립 여부	·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매커니즘과 보상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여성가족부
40	40. 장애이주민의 입국 및 장애 관련 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 법령 또는 정책 폐지 여부	· 장애가 있는 이주민의 입국과 장애서비스 접근을 막는 차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42	42-a. 협약 제19조,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정·보완	· 기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협약, 일반논평 제5호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42-b.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 증감 현황	·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탈시설 전략 이행 강화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44	44-a-1. 공중과 텔레비전 수어통역,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가율	· 공중과 텔레비전의 수어통역 및 화면해설 의무 비율 증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방송통신위원회
	44-a-2.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율	·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행정안전부
	44-a-3.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의 접근가능한 형식(읽기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비율	·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 중 읽기쉬운자료, 점자, 보이스오버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행정안전부
	44-a-4.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a-5.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	·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a-6.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비율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비율	보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b.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지침이 반영된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 장애인이 방송 콘텐츠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방송통신위원회
46	46-a.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	· 실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GPS 추적장치 설치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당사자 동의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46-b.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하는 실종 예방 정책 마련 여부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하는 실종 예방 정책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48	48-a.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 장애인의 동등한 결혼, 가정 꾸리기, 출산(임신) 및 양육 등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802	핵심	행정안전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지표 유형	소관 부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 여부	조, 제804조(약혼), 동법 제808조, 제804조(혼인), 동법 제873조, 제887조, 제894조, 제898조, 제902조, 제906조 (입양) 등의 법률 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48-b.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여부	·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50	50-a-1.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교육 정책 내 통합교육 관련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교육부
	50-a-2.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	· 일반학교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교육부
	50-a-3.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	·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운영 역량 증진을 위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교육부
	50-b.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읽기 쉬운 학습 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교육부
	50-c.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여부	·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에게도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지원을 보장하여 재원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교육부
52	52-a-1. 상법 제372조 완전 폐지 여부	· 상법 제732조 완전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법무부
	52-a-2. 가입기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여성장애인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률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에 접근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52-a-3.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용률	·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52-b-1. 보건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인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부	· 보건관련 종사자(의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병원종사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는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52(b)-2. 국민 대상 건강 정보 중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형식 등)으로 제공되는 건강 정보 비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련 정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형식(점자, 보이스오버, 수어, 읽기쉬운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54	54-1.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적과 체류 상태에 따른 제한 규정 폐지 여부	· 장애인의 국적과 체류 상태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른 가활과 재활 접근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56	56-a-1. 직종 관련 법률 내 장애유형을 이유로 직종 제한 조항 유무	· 직종 관련 법률 내에 장애유형을 이유로 직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핵심	고용노동부
	56-a-2. 현행 법령 내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 마련 여부	· 현행 법령 내 고용, 취업, 승진, 재훈련에 장애포괄적(차별 제제)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고용노동부
	56-b-1. 전체 인구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비율	· 장애인에 대한 동일 가치 동일 보수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핵심	고용노동부
	56-b-2. 최저임금 배제 장애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 여부	·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지표 유형	소관 부처
	56-c-1. 탈시설 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참여 비율	· 탈시설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고용노동부
	56-c-2.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여부	· 일반 노동시장 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고용노동부
	56-c-3.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보충	고용노동부
	56-c-4. 일반노동시장 내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지적, 청각, 정신장애) 지원체계 구축 여부	· 일반노동시장 내 지적, 청각, 정신장애 등 고용 취약 유형 장애인의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고용노동부
	56-d-1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비율	·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6-d-2.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 증대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여부	·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으로부터 개방되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여부	핵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6-(d)-3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장애여성 의무고용 할당 비율 도입 여부	·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58	58-a-1. 국가 수준의 장애 정책 내 장애인의 빈곤경감계획 강화 조치 마련 여부	·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 및 빈곤경감계획을 강화했는지 확인하는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58-a-2.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의 빈곤율	· 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보충	보건복지부
	58-a-2. 장애인단체와의 논의를 통한 장애수당 액수 검토 체계 구축 여부	· 장애인단체들과 논의 하에 장애수당 액수 검토	핵심	보건복지부
	58-b-1.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 완전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58-b-2.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58-b-3. 관계법령 및 정책 상 기초생활수급, 장애수당 등 수급 대상에 장애이주민, 장애인민 포함 여부	· 장애이주민, 장애인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즉각적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60	60-a.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	·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b-1. 장애유형,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도 마련 여부	· 장애유형,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도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b-2. 소수정당 입후보 장애인 후보자 지원 조치 마련 여부	· 소수정당 입후보 장애인 후보자 지원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c.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여부	· 선거자료 및 투표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강화 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2	62-1. 어문출판물 발행 대비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제작 비율	· 어문출판물 중 점자, 녹음, 데이지도서로 제작되는 출판물의 비율을 통해 마라케시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문화체육관광부
	62-2.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데이지 도서 제작 정부 및 지자체 예산	· 텍스트 데이지 자료, 전자점자도서, 전자책 제작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통해 마라케시조약의 이행을	보충	문화체육관광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지표 유형	소관 부처
		위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62-3. 마라케시조약 이행을 위한 장애인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여부	· 마라케시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문화체육관광부
	62-4.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수	·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수를 통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하는 조치를 확인하는 지표	보충	문화체육관광부
	62-5. 장애인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이용률	·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률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지표	보충	문화체육관광부
64	64-a-1.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등 분리 통계 수집 여부	· 장애 관련 통계 내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분리 등 분리 통계 수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통계청
	64-b-1.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의 비율	·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행정안전부
	64-b-2.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의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예산 중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연구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행정안전부
	64-c-1. 중앙정부의 연간 장애인권리 연구 개발 예산 중 민간 연구기관(연구자)에 지원한 예산의 비율	· 중앙정부의 연간 장애인권리 연구 개발 예산 중 민간 연구기관(연구자)에 지원한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행정안전부
66	66-1. 국제장애인협력사업 지원 사업 수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국제장애인협력사업의 지원 사업 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66-2.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비율	· KOICA에서 집행하는 ODA 총 예산 중 장애특성, 포괄 프로그램 예산의 비율을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외교부
	66-3. KOICA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프로그램 수	· KOICA의 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의 개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외교부
	66-4.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운영 횟수	· KOICA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운영하는 민간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외교부
	66-5.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에 장애관련 내용 포함 여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하는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에 장애포괄을 위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외교부
68	68-a-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연도별 개최 횟수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의 연도별 개최 횟수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68-b-1-1. 단일 독립 선출위원회 내용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조항(제5조, 18조) 개정을 통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국가인권위원회
	68-b-1-2. 국가인권위원회법 재정 자율성 확보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조항(제3조)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40조 준용한 독립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국가인권위원회
69	69.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 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여부	· 장애여성 및 탈시설 관련 최종견해에 따른 1년 이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70	70. 정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게 정부의 최종 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 요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정부, 국회 구성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관련 직군 각 구성원에게 정부의 최종 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 요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번호	지표안	지표 정의	지표 유형	소관 부처
	의 최종견해 전달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 요구 여부	표		
71	71.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단체 포함 협의체 운영에 관한 법령 등 규정 마련 여부	· 정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단체 포함 협의체 운영에 관한 법령 등 규정 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72	72. 최종견해를 다양하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 여부	· 최종견해를 다양하고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핵심	보건복지부



## 토론 1

최승철 박사(전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

## 최종견해 권고 사항별 이행 측정 지표(안)에 대한 의견

최 승 철 (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부장)

먼저 지표를 제시하는 형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유엔이 사용을 권장하는 인권 지표에 대한 소위 메타데이터시트 형식을 따르고 있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메타데이터시트의 항목 중 “측정요소(핵심내용)”의 성격이 다소 애매합니다. 그것에 담긴 내용을 보자면, 최종견해의 권고 내용을 정리한 부분도 있고, 통상적인 메타데이터시트에 포함되는 ‘지표의 정의’에 들어갈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측정요소’ 항목은 삭제하고 지표의 정의에 들어갈 내용은 지표의 ‘정의’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그리로 보내고, 권고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메타데이터시트의 통상적 항목인 지표의 ‘근거’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메타데이터시트의 항목인 ‘측정주기’를 포함시키기를 권합니다. 측정주기는 지표의 속성과 4.5차 국가보고서 심사 일정,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표별로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권고 사항별 지표와 관련해서는 제안된 지표안이 해당 권고 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또는 어떤 지표가 해당 권고 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고 사항 6(a)는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가 놓치고 있는 일부 장애를 포함시키라는 것이므로, 장애 범주의 확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해당 조항의 개정 여부가 그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권고 사항 6(c)는 장애 관련 정책수립자, 법조계 인사, 교사, 장애인을 상대하는 다른 전문직들이 협약 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내용에 협약에 관한 것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충분히 포함되는지, 가령 해당 교육 시간이 충분한지가 그 지표입니다. 이것은 제안된 지표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좀 일반적인 지표라기보다는 협약에 관한 교육을 타깃으로 하는 더 특정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6(c)는 그러한 교육에 장애인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하므로, 적어도 그 교육 내용을 만드는 데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지 여부도 지표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권고 사항 10은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에 다양한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를 통해 적어도 장애인과 관련한 공공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장애인정

책종합계획이 협약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에 대한 지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단체들의 장애 다양성 정도라는 지표가 적절할 것입니다.

권고 사항 12(a)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장애와 다른 차별 사유를 이유로 하는 다중적.교차적 차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규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다중적.교차적 차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법 제5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협약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가 겪을 소지가 있는 다중적.교차적 차별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인권위, 법원 등 장애차별시정기구들이 그 조항을 근거로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차별을 다중적.교차적 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를 12(a)의 지표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권고 사항 12(d)는 정당한 편의를 장애에 기반한 차별로 인정하고 그 차별의 진정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를 하라는 것인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므로 그 권고의 전반부에 대해서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권고의 후반부에서 ‘효과적인 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것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의 판단 기준 상의 문제라면, 해당 지표는 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 또는 지침의 수립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권고 사항 14(a)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과 여성 관련 법률의 장애 주류화를, 그리고 장애인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주류화를 하라는 것인데, ‘주류화’ 법률.정책.프로그램은 장애 또는 성 ‘특정적’ 법률.정책.프로그램과는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표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 또는 장애 주류화는 성 또는 장애 구별 없는 법률.정책.프로그램에서 성 또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을 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성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불이익(장애남성에 대한 장애여성의 불이익 또는 비장애여성에 대한 장애여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장애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프로그램이나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 장애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프로그램은 성 또는 장애 주류화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하면서 해당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화 정의에는 해당 정책.프로그램의 모든 과정(기획.이행.평가 등)에 주류화되는 속성(성 또는 장애)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가 포함되므로 초안에 제안된 바와 같이 그들의 참여를 측정하는 지표의 구성은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14(d)에서 장애 여성과 여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는 장애 주류화 조치와 대비되는 장애 특정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권고 조항 20(a)은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동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법을 개정하라는 것으로, 이 권고에 대한 지표는 이들 건축물에도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참고로, 이들 건축물에 부과할 신규 접근성 기준이 현행의 접근성 기준과 반드시 동일한 필요는 없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갖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권고 사항 20(b)은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라고 권고하는데, 해당 우려를 표명한 최종견해 단락(para.) 19(b)를 보면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 영역에서의 접근성 미비를 특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b)의 이 권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역에서 접근성 기준의 구축과 그 법적 강제수단의 마련 및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b)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의 확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도 권고하는데, 이는 건축 인허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대상 건축물이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접근성 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법상의 제재 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고 부분에 대한 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여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않기에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신개축 건축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비율과 같은 것을 지표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권고 사항 20(d)는 20(b)와 일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만 20(d)는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근성에, 특히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 권고 사항에 대한 지표는 시각 및 청각 등 감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민간 웹사이트 접근성은 그렇지 못하여 관련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는 모바일 앱 접근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20(d)는 특별히 학교와 가정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권고하는데, 이 권고의 배경이 되는 우려 사항인 19(d)를 살펴봐도 그 권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19(d)에서는 디지털 작업 환경(work environment)에서의 접근성 장벽을 지적합니다.

권고 사항 22(a)는 자폐성장아인, 심리사회적장애인과 가족을 타깃으로 하는 자살 및 실종 예방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라는 것인데, 이 권고에 대한 지표는 그러한 예방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제안된 지표를 보면, 관련 예산의 책정 여부를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관련 정책이 있는지를 포착하는 것은 소위 구조지표이고, 그 정책이 이행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는 과정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여 자살 및 실종이 감소되었는지를 포착하는 소위 결과지표가 가장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표의 측정치에서 긍정적 변화는 상당히 더디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결과지표야말로 인권 증진을 포착하는 지표이기에 가능한 한 결과지표도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회복 계획을 장애주류화하라는 권고 사항 26(a)에 대한 지표는 각종 대응과 회복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그 수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장애주류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적절하게 존재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초안에 제안된 바처럼 그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



스의 비율을 지표로 삼을 수도 있겠으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셀 수 있는 단위를 정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 입원실 접근 등과 같이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매우 중요한 접근 영역에서 장애주류화 조치가 있는지를 포착하는 지표가 훨씬 더 측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26(d)는 긴급상황에서 모든 장애인이 필수적인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적절한 장비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으로, 현재 우리 정부가 긴급상황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거의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모바일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폰을 통한 긴급상황 정보의 제공이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지표를 그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시설 수준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구내방송이나 경보 등의 장비가 사용되므로 그러한 장비를 통해 제공되는 긴급상황 정보가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인지를 포착하는 지표도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권고 사항 30(a)는 사법절차에 대한 장애인의 효과적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사법 접근성 보장 행동계획을 채택하라는 것인데, 해당 우려 사항 29에서 우리나라 사법 접근성의 문제점을 너무 추상적으로 지적하여 그 권고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표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표 구성에 앞서 법원, 검찰, 경찰, 교정시설 등의 사법기관은 물론 국가인권위 등 준사법기관에서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다른 지표 구성에도 해당하는 유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30(a)에서 말하는 ‘사법 접근을 위한 행동계획’은 접근성 조치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안으로는 시설물 접근성, 디지털 기기를 통한 사건 처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수화통역을 비롯한 의사소통보조인 제공 체계 구축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0(a)에 대한 지표는 그러한 접근성 제공을 위한, 시간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행동계획의 마련 및 이행 여부를 포착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권고 사항 30(c)도 망라합니다.

권고 사항 30(b)는 장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효과적 참여를 위한 “개별화된 지원”(individualized assistance)을 포함하는 “절차적 조정”(procedural adjustment)을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개별화된 지원’이 무엇인지 다소 불분명하지만 일단 그것이 ‘절차적 조정’ 또는 ‘절차적 편의’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개별화된 지원은 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절차적 편의와 달리 사법기관이 장애인의 장애를 인지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에게 절차적 편의가 필요한지 묻고, 해당 사법기관의 사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해당 장애인 개인에게 필요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30(b)의 지표는 ‘사법절차에 대한 장애인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개별화된 지원과 절차적 편의 제공 건수’입니다. 참고로, ‘건수’와 같이 수치화되는 지표는 그 측정주기를 1년 등과 같이 1년이나 그 이상의 년 단위가 되어야 하는바, 정확한 지표 명은 그냥 ‘건수’가 아니라 ‘연간 건수’ 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법절차가 사건관계인

의 이해관계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논평 제6호 para. 25(d)는 “사법에 대한 접근의 맥락에서 절차적 편의(procedural accommodation)는 합리적 편의와 혼동되지 말아야 한다. 후자는 비례성 개념의 제약을 받지만 절차적 편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편의’에는 ‘그 제공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 정당한 편의 관련 조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제4조의 예외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사법절차에 한해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및 안전(제14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제15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제17조) 등의 기본적 자유권 보호에 대한 권고 사항들과 관련해서는 법원, 국가인권위, 장애인권리옹호기관 등의 인권침해 구제 및 감시 기구들에 진정되어 구제된 연간 사건 수와 같이 드러난 사건 수를 측정하는 지표 이외에 직권조사 등에 기반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건 수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표 측정에 사용되는 통계는 성으로, 그리고 제16조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아동과 성인을 분리하기 위한 연령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 사항 44(a)는 공공정보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표로 “정부 및 공공기관 출판물의 접근 가능한 형식(읽기 쉬운 버전, 점자, 보이스오버) 제공 비율”이 제시되고, 해당 ‘자료 수집 방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문의 및 회신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인천전략의 지표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그 지표를 측정할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해당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해야 하는데,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ISBN 부과 대상이 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발간 자료에 대해 ISBN 신청 양식에 해당 자료가 어떤 장애인 접근성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하는 항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권고 사항 46(b)는 협약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하게 실종예방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데, 다른 권고 사항들에도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권고에 대한 지표로 해당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포착하는 지표만을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조치를 취한 효과 또는 결과를 포착하는 결과지표도 함께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 교육부 등이 수집·관리하는, 연령으로 분리되는 장애인 실종 통계 등을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하라는 권고 조항 48(b)과 관련하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수당 등의 수혜자 숫자와 같은 지표도 중요하지만 개별 가족이 받는 그 수혜의 양과 질도 중요합니다. 한 장애인 가족에게 투여되는 양육지원 서비스의 평균 예산액, 장애아동 수당액 등의 증가율이 정부의 가용한 총 재원인 총국가예산액의 증가

울과 최소한 같이 가는지, 아니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고 사항 50(c)는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적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보장”하라는 매우 특정한 권고인데, 이에 대한 지표도 역시 그 편입하는 장애아동의 연간 숫자라는 특정한 지표가 적절할 것입니다. 제안된 지표들에는 그러한 편입을 위한 지침 마련,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까지 굳이 지표화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권고 사항 52(a)는 장애여성을 위한 성 및 생식 보건, 정신보건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행하라는 권고인데, 이 권고의 방점이 보건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다면 그 지표로 보건 프로그램의 숫자가 적절할 것이지만 과연 기존 보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이 우려 사항이었던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권고가 장애 특정한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이행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 프로그램을 장애주류화하라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보건 프로그램을 장애주류화하는 것이, 즉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고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권고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나라 장애여성의 보건 서비스 이용 실태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보건 서비스 이용률이 지표로 제안되었는데, 측정산식을 보자면 그 이용률의 분모는 장애여성 총 숫자입니다. 이것은 해당 프로그램을 장애(여성) 특정적 프로그램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 교육, 노동과 같은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은 비장애인과 대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정신 보건과 성 및 생식 보건 서비스(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통계는 성과 장애로 분리될 수 있는바, 그러한 통계는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의 갭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이때 그러한 갭은 52(a)의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권고 사항 56(a)는 노동권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라는 것으로, 초안에 언급된 것처럼 장애차별적인 고용 관련 법률의 조항들은 이미 여러 실태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에 대한 지표는 이미 장애차별적인 것으로 드러난 그러한 법률의 조항들이 개정을 통해 철폐된 숫자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차별적 법조항들이 이미 발굴되었음에도 여전히 철폐되지 않고 있는바, 그 이유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의 여부를 굳이 지표로 포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56(a) 후반부 권고 내용인 ‘고용에서의 장애차별 철폐를 위한 조치 도입’은 추상적이고 이에 대해 제안된 해당 지표인 ‘차별철폐 조치 수와 내용’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입니다. ‘고용에서의 장애차별 철폐를 위한 조치’라고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칙 조항의 강화, 동법을 운용하는 국가인권위에 시정명령권 부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법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CRPD 위원회가 우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고용 영역에서

장애차별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고용에서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조치를 발굴하는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그 내용이 추상적인 다른 여러 권고 사항에도 해당됩니다.

권고 사항 60(a)의 후반부 권고에 포함되어 있는 ‘공적 생활에서 장애인 완전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의 지표는 ‘장애인의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취업률’이 적절할 것입니다.

권고 사항 62의 후반부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문화적 권리를 누리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인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라는 문구는 이 권고에 대한 지표가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포착하는 지표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문화권,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영역에 관한 권고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해당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평등의 정도)를 포착하는 지표가 제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영역들도 비슷하지만 문화권에 대한 국내 실태조사와 그 결과인 통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장애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고 사항 64(a)는 연령, 성,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로 분리된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를 신속히 개발하라는 권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데이터가 상기 열거된 요소들로 분리될 수 있게 조치하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조사하여 수집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장애로 분리되지 않아서 데이터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권고는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의 해당 권고와는 다른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얻은 데이터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데이터를 분리하는 요소에 장애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데이터가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많은 데이터는 연령, 성별, 소득, 교육 수준, 고용 상황, 거주지 등의 요소로 분리 가능합니다. 지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금번 권고 내용의 취지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 사항 66은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참여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해당 장애인단체는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장애인단체도 포함하며, 수원국 장애인단체의 참여는 공여국 장애인단체의 참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공여국인 우리나라 장애인단체의 참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기구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더 많은 부분이 가능한 한 좀 더 장애포괄적이 되도록 개발협력기구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형성에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관협력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 사항 66에 대한 지표는 이러한 서로 다른 공여국 및 수원국 장애인단체의 참여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제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권고 사항별 개별 지표들이 해당 권고 사항의 적절한 지표인지, 또는 적절한 지표일 수 있는지에 관해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결론 삼아 요약하자면, 먼저 일부 권고 사항들은 추상적이고 제안된 해당 지표들도 추상적인데 그러한 권고 사항들을 우리의 실태에 맞게 구체화시켜서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좋겠습니다. 둘째로, 제안된 많은 지표들이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같은 구조지표인데, 설사 해당 권고 사항 그러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더라도 가능하다면 해당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현되는 관련 인권의 보호, 보장 및 증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포착하는 결과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로, 해당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숫자나 그 이용자 숫자가 지표로서 의미가 있지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포착하는 투입된 자원의 양과 같은 지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권고로써 보호 및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포착하는 지표가 가능한 한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표를 위해서는 정부가 해당 통계들을 장애로 분리되도록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발제문 초안에서 제안된 지표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 설정되고 주기적으로 측정된다면 그것들은 우리 정부 및 사회로 하여금 최종견해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토론 2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 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은영 조사관

우선, 이 귀한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이를 대표하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최종견해 이행지표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지표개발연대의 단장님이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를 하셨던 김기룡 교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또 함께 참여하는 단체들도 그동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그 결과물을 볼 수 있게 되어 놀랍습니다. 앞으로 이 이행지표가 어떻게 활용될지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별도의 발제문 없이 이행지표만 받은 상태에서 토론문을 작성하게 되어서 지표개발연대에서 의도하신 바와 다른 말씀을 드리게 될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지표개발연대에서 이행지표를 개발하시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5년에 개발했던 모니터링 지표를 참고하면서 그리고 지난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여러 각도에서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행지표 자체에 대한 의견보다는 개발한 이행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지표의 활용과 향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표개발연대에서 이행지표를 개발한다고 들었을 때 그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고민은 이행지표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와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이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17개 목표(세부목표 169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를 통해 232개의 SDGs 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2017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SDGs 지표 프레임워크는 각 국가에 책임기관을 두고 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책임기관은 이 지표를 분석해 SDGs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7개의 목표에 따라 169개의 세부목표가 있고, 세부목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세부목표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 평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이 목표를 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 아래 화면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이 웹사이트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통계개발원 Fax : 042 366 7123 Email : sdgkostat@korea.kr

Home > 17개 목표 > 목표 1

### 세부목표

-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의 절대적 빈곤 종식
- 1.2  
2030년까지 국가 빈곤 정의에 따른 상대적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
- 1.3  
사회적 보호 체제 및 조치 이행과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 1.4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재산의 소유와 통제, 기술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 지표

- 1.1.1 이용가능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1.2.1 데이터 수집중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 1.2.2 데이터 수집중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 1.3.1 이용가능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1.4.1 이용가능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1.4.2 이용가능  
(a)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페이지 모습. 위의 각 그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세부목표와 관련지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영국의 SDGs 데이터 홈페이지였는데, 아래 화면과 같이 색과 화살표로 국내 이행 상황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 영국의 SDGs 데이터 홈페이지 모습

만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목표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지금 개발하신 이행지표가 각 목표별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세부 지표로 활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중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차 최종견해가 나왔을 때부터 장애계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 모니터링 위원회 또는 회의체 등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중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 당사자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단체와 함께,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지표들을 선정하는 일을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했고 이것이 가능한지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의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상하고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되도록 현실에 발을 딛고 올해와 내년에 협약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가 이행전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행전략이 있다면, 이에 맞춰 모니터링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지표를 선정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국가 이행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행 목표부터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목표를 선정하고 세부지표를 만드는 작업은 국가인권위원회 홀로 할 수 없고 장애인단체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4월을 시점으로 몇몇 단체에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연대를 구성해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중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에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이행지표에 대해서는 이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함께 미리 고민했으면 하는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접근성 같은 몇몇 사안은 대도시와 지역을 구분해서 이행상황을 평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재의 이행지표에서는 특별히 지역간 차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지표 중에 몇 가지는 현재 통계가 있는지 확실치 않거나 별도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과 인력의 측면에서 민간영역보다는 나올 수는 있겠으나 저희 역시 항상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배정된 자원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진정사건 조사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건 조사, 장애 관련 정책연구 및 권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활동에 나누어 쓰고 있는 형편이라,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해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한정된 예산과 자원 안에서라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탓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자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이라는 엄청난 작업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 3

유경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기획팀 팀장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관련 토론문

유경민(한국장애인개발원)

###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배경

- (제2·3차 국가보고서 제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의 쟁점목록은 제네바유엔사무처 및 대한민국대표부에서 2018년 3월 12일 대한민국정부로 공식문건으로 접수되어, 해당 부처의 답변서를 기반으로 국가보고서를 작성, 2019년 3월 8일 제출함
- (국가보고서 심의) 2021년 11월 23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가 제네바에서 제27차 회기(2022.8.~9.)에 예정되어 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함. 이에, 제네바 현지 심의를 2022년 8월 24일부터 8월 25일 양일간 진행됨
- (최종견해 공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2022년 9월 최종견해(초안) 공표, 10월 6일 최종견해(최종) 공표됨
- (다음 정기 보고) 위원회는 보고 전에 쟁점목록을 작성하고, 당사국이 쟁점목록을 받은 후 1년 이내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임. 당사국은 제4·5·6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31년 1월 11일까지 답변 제출할 것
- 이에, 23년 기준 9년 후 정기유보보고서 대비 및 한국 정부 이행 상황 등 최종견해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인권위, NGO 단체 모니터링 필요

### 2. 모니터링 및 인권지표

#### 1) 모니터링 개념

- 정부 업무에서 평가의 개념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임(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부터 추진 과정에 이르는 모니터링 또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 정책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모니터링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모니터링은 추진 중인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 및 제공함으로써 그 결과가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방법임. 모니터링은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합한 수단을 활용하여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정책의 성과 평가 수단으로 실시하는 절차라 할 수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Fisher(1995)는 정책을 공급자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이를 모니터링 결과에 반영할 것을 강조함

2)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up>1)</sup>

- 지표 개발은 CRPD 이행 및 감독(제33조) 뿐만 아니라 통계와 자료 수집을 규정하는 제21조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정책의 운영은 인권, 통계 체계와 밀접히 상호 연관되어 있어야 함. 지표를 통해 CRPD 이행에 따른 인권 상황의 진전을 조사 및 평가할 수 있음
- CRPD 이행의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심도있는 질적 조사 및 법률 조사와 함께 지표를 통한 통계적 분석이 요구됨. 정책과 제도는 바람직한 성과로 이어져야 하며 잘 구성된 지표는 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함. CRPD 인권 진전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표 뿐만 아니라, 이행과제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중요함
- 지표의 개념화
  - 구조지표: 국가가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행하는 수용, 의도, 그리고 과제 설정(선택의정서 비준, 정책과 전략·제도나 계획의 구체화, 조사나 감독의 시행 등)
  - 과정지표: 과제를 인권 신장으로 전환하고자 국가가 기울이는 과정상의 노력을 측정(배정된 예산,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비율,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의 수, 정책과 제도에 의한 조치 등)
  - 성과지표: 인권 주제(당사자)가 인권을 향유하는 정도를 평가(유급 노동참여 비율, 일정 시간 내에 구제받은 사람의 수, 대학교육 받은 사람의 비율 등)
- 지표 자료원: 개념화를 통해 얻은 인권지표가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데이터가 수집 가능해야 함

3. 최종견해 이행지표 마련을 위한 제언

1) 이행지표 공통사항

- 모니터링 주기(중장기), 지표선정 과정, 지표 난이도, 정량 또는 정성 지표에 대한 구분 필요
-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가통계 등 활용 필요
- 자료원 또는 자료 수집 방법의 객관성: 정부 공식문의를 통한 서신은 현실가능성 부족
-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과제 도출, 그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로 인권상황 점검 필요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보완
- 국제사회 비표 필요: SDG 지표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과제 고려 필요

2) 일부 조항별 지표 코멘트

- 측정요소(핵심내용)은 추진해야할 정책과제이며, 그에 따른 지표 설정한 것

▶ 일반원칙 및 의무(제1조~제4조)

- 법령에서 장애개념 수행 여부(연구 조사 실시 여부)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질적 평가 여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 모든 장애인단체 참여보장을 해당 법 조항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부분 포함)

▶ 장애여성(제6조)

-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장애여성 또는 여아의 권리를 포괄하는 원칙 천명 여부(법률 조항 유무)

1) 국가인권위원회(2018),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 ▶ 인식제고(제8조)
  - 장애인 인식제고 국가전략 채택 여부는 어떻게 측정(협의체 구성 등)
  - 공익 광고 예산 대비 장애인 권리 관련 공익광고 비율, 예산 비중
- ▶ 법앞의 동등한 인정(제12조)
  -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가적인 연구 필요, 지표의 명확성 드러날 필요
- ▶ 착취, 폭력 및 학대로 부터의 자유(제16조)
  - 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채택 여부
- ▶ 개인의 완전함 보호(제17조)
  -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불임 및 동의없는 임신중단 관행 조사를 위한 매커니즘 및 정책 유무 등 어떻게 확인(임신중단 현황 존재여부 파악 필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
- ▶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 로드맵 선택권에 대한 인식제고활동, 탈시설 가이드라인 반영 사항 확인
- ▶ 교육(제24조)
  - 통합교육 정책 수립 여부(통합교육 개념 정립 필요)

3) 1차 및 2·3차 최종견해 이슈 위주로 점검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과제별 이슈 선정)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sup>2)</sup>에 게시된 대한민국 제1차, 제2.3차 최종견해를 비교한 결과 연속적으로 권고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권) 협약 조항(인권적 접근)과 부합하는 국내법 및 정책 검토 필요하며, 인권적 모델 원칙으로 장애판정제도 방향 재설정 모색.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 (젠더관점 및 장애인단체 참여) 장애관련 의제 등 젠더관점 주류화, 장애인단체 참여를 통해 장애인 인식제고 및 모니터링
  - (접근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제공 및 모든 건축물의 장애인 접근 보장 의무규정 포함. 장애인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의사결정)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대체 및 관련 교육 실시, 장애인이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 제공 등 절차적 조정 등
  - (학대 피해)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 입소시키는 것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강제적 치료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인도적 처벌로부터 모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자립지원) 자립지원 로드맵 관련 장애인단체와 검토하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존중
  - (포용 교육) 교육 시 필요한 편의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 등 종합적인 포용 교육 정책 수립 등
  - (고용 및 사회참여 보장) 장애인의 일할 권리보장, 선거과정과 정치 및 공적 생활에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보장
- 제2.3차 최종견해(2022) 강조 사항(new 권고)
  - 모든 정책의제 형성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장애인단체 참여 강조. 장애인 관련 전문 업무 종사자

2)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



에 대한 인식제고 및 분야별 장애관련 교육 필요 강조

- 장애아동 놀 권리 보장
- 장애인 자살 및 실종 방지, 지역사회 내 위급상황에서 생명권 보장
-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계획 등 장애 주류화
-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계획(지역사회) 및 장애인 자기결정권 존중
- 지역사회의 장애인정책 계획 등에 대한 노력 강조
- 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및 정보 접근권 강조
- 장애인 권리 및 통합 관련 연구 지원 및 수행 강조

4) 구체적 지표 설정을 위한 최종견해 이행과제 도출 선행

- 현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진행 중, 학계-단체 의견조사 실시 예정
- 이행과제(정책) 도출 후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추후 명확한 지표 설정 가능

5) 타 협약의 모니터링 방법과 NGO 연대와의 의견반영 여부 등



## 토론 4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



[ 참고 ] UN CRPD 한국 2, 3차 최종견해 (국문 / 영문)

#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sup>3)</sup>

2022. 9. 9.

## I. 서론

1. 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 25일 개최된 제598차 및 제599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개최된 제614차 회의에서 이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지침에 따라 작성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정기 보고서를 환영하며, 위원회가 작성한 쟁점목록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한 점에 대해 당사국에 감사를 표한다.
3. 위원회는 관련 정부 부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던 당사국 대표단과의 유익하고 성실한 대화에 감사를 전한다.

## II.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특히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취해진 다음의 입법 조치를 환영한다.
  - (a) 2021년 12월, 2008년 협약 비준 시 제25조(e) 유보 조치에 대한 철회;
  - (b) 2016년, 당사국 공식 언어로 수어를 인정한 「한국수어법」 채택;
  - (c) 2017년, 점자를 한글과 함께 당사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자 한글과 동일한 지위임을 규정한 「점자법」 채택;
  - (d) 2018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법」 채택;

3) 본 번역본은 <UN CRPD 한국정부 심의대응 장애계연대>가 번역한 문서로 정부의 공식 번역본은 아닙니다.

(e) 2021년,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로드맵 채택.

### Ⅲ.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 A. 일반원칙 및 의무(제1~4조)

5.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 사항을 주목한다:

- (a) 「장애인복지법」 상 수정된 장애의 정의를 포함한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이 아직 협약에 완전하게 부합하지 않고 시청각장애인이나 HIV/AIDS 감염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b) 최근 장애등급제가 6개 등급에서 2개 정도로 개편 되었음에도 장애등급제를 포함하여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이 여전히 당사국에서 만연해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c)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와 보건, 그 밖의 종사자 사이에서의 인식이 부족함.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국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에 비추어 검토하고, 특히 심리사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장애인 등의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
- (b) 의료적 장애모델의 요소를 인권적 장애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는 것과 자립생활 및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지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판정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
- (c) 장애인단체의 긴밀한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 및 보건 그리고 다른 종사자에게 협약상의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7.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을 주목한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 할 것을 권고한다.

9. 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률,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가 부족한 것을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와 관련된 일반논평 제7호(2018)를 상기하고, 당사국이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이행하며,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 간성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장애인과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단체와의 의미 있는 협의를 보장 할 것을 권고한다.

## B. 구체적 권리 (제5~30조)

### 1) 평등 및 비차별(제5조)

11.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시한다. :

-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이주 장애인, 성소수자 장애인 및 HIV 감염 장애인이 직면하는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b)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심리사회적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는 사실;
- (c)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 합리적 조정의 거부에 대한 인식 부족;
- (d)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부담.

1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6호(2018)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0.2 및 10.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현존의 차별금지 법령,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과 그것이 연령, 성별, 인종, 민족성, 성적체성, 성적지향 또는 어떠한 다른 지위에 기반한 차별과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 (b) 심리사회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협약에 비추어 검토할 것;
- (c)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을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보상 제도를 보장할 것;
- (d) 합리적 조정의 거부가 장애에 기반한 차별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차별을 보고하는 효과적인 조사를 보장할 것.

## 2) 장애여성 (제6조)

13.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한다:

- (a)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에 성별 관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성평등 관련 법률 및 정책에 있어 장애 관점이 부족하여 장애여성과 장애여아에 대한 차별, 소외 및 배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
- (b) 장애인 관련 활동을 기획·이행하기 위한 인권적 장애모델 기반의 성인지예산 부족;
- (c) 국내 법률 체계는 장애여성과 장애여아가 직면한 다중 및 교차 차별을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적절한 정책 대응을 설계하는 관점을 가진 장애여성과 여아가 경험하는 다중, 교차 차별에 대한 데이터나 연구가 부재한 점;
- (d) 고용, 공적 및 정치 생활, 의사 결정, 사법 제도에 있어 장애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

14. 위원회는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일반논평 제3호(2016년)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5를 상기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장애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모든 성평등 법률, 특히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8)에 주류화하고, 성인지 관점을 장애정책과 프로그램에 주류화하며, 성평등 및 장애 관련 법과 프로그램 기획 및 이행에 있어 장애여성 및 여아와의 협의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 (b) 일반적인 장애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이 젠더 관점에 입각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수립되도록 보장할 것;
- (c) 법률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고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을 채택할 것;
- (d)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역량강화와 완전한 참여, 그리고 모든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당사국은 장애여성이 정부부문과 사법체계를 포함하는 정치적인 삶에 있어 의사결정시 대표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 3) 장애아동(제7조)

15.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시한다.

- (a)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장애아동과 협의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재;
- (b)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
- (c) 단지 0.03%의 놀이터만이 접근 가능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

16. 아동권리위원회와 장애인권리위원회(2022년)의 공동성명을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장애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견해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발달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

- (b)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개발하여,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생활을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
- (c) 놀이터가 장애아동에 대해 포괄적이고 접근가능 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검토할 것.

#### 4) 인식제고(art. 8)

17.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 (a) 사회와 언론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한 장애인 권리의 인식제고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 (b) 정치논쟁과 소셜미디어에서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 만연한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되고 있음..

1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견에 대항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 할 것;
- (b)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능력 및 기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집행관, 언론,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과 함께 혹은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인식제고 모듈을 모든 교육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도입할 것.

#### 5) 접근성(제9조)

19.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한다:

- (a)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규모와 건축 연도에 따른 면제가 존재하고, 이로써 공공건물의 완전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는 점; ;
- (b) 정보통신 기술 및 시스템의 결여를 포함하여, 협약에 따른 모든 범위의 접근성 의무 이행을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부재;
- (c) 교통에 있어 특별한 요구를 개선하기 위한 2022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가 제외된 점과 버스 번호, 노선, 탑승안내를 포함하는 불충분한 정보 제공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 (d)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제한된 접근성 보장 의무로 인해 발생된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을 막는 디지털 근무 환경의 장벽.

20. 접근성에 대한 일반논평2(2014)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9와 세부 목표 11.2, 11.7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건축물의 규모, 수용 능력,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포함하여 국내법을 개정할 것;
- (b)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 확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 (c)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중환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수를 늘리고, 버스 번호, 노선을 포함한 정보와 탑승 안내가 접근 가능한 형식이 되도록 보장하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공공장소와 환경을 개선할 것;
- (d) 교육시설과 가정 모두에 있어, 그리고 공적·민간 웹사이트와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있어, 모든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할 것.

## 6) 생명권 (제10조)

21. 위원회는 다음을 깊이 우려한다:

- (a) 자폐성장장애인과, 심리사회적장애인의 높은 자살률과 실종률, 아울러 부모가 장애아동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
- (b) 거주시설에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장애인들의 사망..

2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자폐성장장애인과 심리사회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조치를 가지고, 장애인 자살 및 실종 예방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며, 이에장애인 단체를 통한 장애인과의 긴밀한 협의와 활발한 참여를 보장할 것;
- (b) 위험한 보건 상황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긴급 탈시설을 추진하는 조치를 개발할 것.

## 7)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제11조)

23.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 (a)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재난 위험경감 계획, 정책 및 절차규정이 부족한 점;
- (b) 재난위험경감 샌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와 기후변화 대응, 아태지역 “Make the Right Real” 인천전략 목표 7 관련 국가 차원의 이행과 보고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

2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 장애여성,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감각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재난위험경감계획 채택을 가속화 할 것;
- (b) 모든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설계하고 이행할 때 국가 및 지방 차원 그리고 전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난위험경감 샌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11, 13에 따라 포괄적인 전략을

### 채택할 것.

25. 위원회는 장애인,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코로나19팬데믹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으며, 긴급한 정보와 기기에 접근하는데 장애인이 장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26. 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표한 장애 포괄적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브리핑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백신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는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과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여타의 경제적, 사회적 프로그램에 장애를 주류화 할 것;
- (b) 긴급상황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나오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적절한 지원 제공을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 (c)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킬 것;
- (d) 위기상황과 인도주의적 긴급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적절한 기기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8) 법 앞의 동등한 인정(제12조)

27. 위원회는,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 손상을 근거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제도와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해 가는 데 있어 진전이 없고, 이 체제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일정계획이 없음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접근 가능한 형식의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이전 권고(CRPD/C/KOR/CO/1, para. 22)를 반복하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 논평 1호(2014)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후견제와 피후견제를 포함한 대체의사결정제도를, 개별화된 지원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교체할 것;
- (b)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정과 의사결정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관계자 훈련과 개혁 절차에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의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 (c)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점자, 수어 및 읽기 쉬운 자료와 같은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의 개발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배포할 것.

## 9)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29. 위원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사법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제한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 (CRPD/C/KOR/CO/1, 제 24항)을 참조하고 2020년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에 의해 발간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발전목표 16.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협약에 따라 모든 사법절차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
- (b) 장애인이 다양한 측면의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별화된 지원의 제공을 포함한 절차적 조정을 마련할 것;
- (c) 점자, 수어, 읽기 쉬운 형태와 음성 및 화면해설 등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고 모든 법정 시설에 물리적 접근이 보장되도록 접근가능한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 (d) 법관과 사법 종사자에게 협약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 (e)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마련할 것.

## 10)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4조)

31. 위원회는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 장애인이 여전히 손상에 근거하여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의 적용을 받으며, 격리를 포함한 임의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32. 위원회는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지침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 내용을 권고한다:

- (a) 인지된 자타해위험과 손상에 근거하여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과 정신건강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들을 폐지하고, 손상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예를 들어 심문 및 구금할 때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조정과 같은 비차별을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하며, 심리사회적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회복시킬 것;
- (b) 심리사회적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이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5조)

33. 위원회는 특히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정신병원, 병원, 교도소 및 교육서비스에서 격리, 신체적, 화학적 및 기계적인 강박과 기타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향정신성 약물의 사용 및 신체적 억압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과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권고한다:

- (a) 사법, 교육, 건강, 심리사회 및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 모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이 과정에 협의하고 참여할 것;
- (b) 아직도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이익제기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조사하고 제재하여 그 행위에 비례하는 처벌을 부과할 것.



## 11)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6조)

35.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한다:

- (a) 장애인을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일반 대중 및 특별히 장애인들의 인식 부족이 있고, 모든 환경, 특히 가정, 학교, 직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에 대해 종합적인 전략의 부재;
- (b)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점과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및 관련 진정사항에 대한 정보 및 통계 데이터 가용성의 제한;
- (c)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 장애여성을 포함한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가능한 쉼터의 부족;
- (d)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 인식을 위한 종사자, 돌봄 제공자, 가족, 간병인 및 사법종사자 대상 훈련이 충분치 못함.

3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사국에 권고한다:

- (a) 장애인을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장애인들과 시설 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하며, 장애인이 학대상황을 피하고 인식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보장할 것과 착취, 폭력 및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진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고 재할을 포함하여 보상 및 충분한 배상과 같은 적절한 구제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b) 시설 안팎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 및 시행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분리된 통계를 수집할 것;
- (c) 지원센터 및 응급쉼터를 포함하여 성 관련 폭력의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서비스가 접근 가능할 것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보장할 것;
- (d) 장애인의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종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인식하고 폭력 피해 장애인들과의 더 나은 의사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

## 12) 개인의 완전함 보호 (제17조)

37. 위원회는 장애여성들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이 수행한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가 없음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장애여성과 소녀,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강제불임과 동의 없는 임신중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확인, 조사 및 추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며, 강제불임수술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13) 이주 및 국적의 자유(제18조)

39. 위원회는, 특히 심리사회적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장애이주민에 대해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을 여전히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장애이주민이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14)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4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를 가지고 제시한다:

-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및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 (b) 현존하는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탈시설화 전략에 대한 느슨한 이행, 특히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지적 혹은/그리고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의 부족.

4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2017)과 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시키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이 로드맵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게 하며,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를 포함토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형태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특정 형태의 삶의 방식에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분리에 반대하는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보장할 것;
-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 15)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제21조)

43.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 (a) 공공 및 민간 매체 모두에서, 그리고 특히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읽기 쉬운 자료, 평이한 언어, 자막, 수어, 점자, 오디오 설명, 촉각, 보완 및 대체 의사소통 등과 같이 접근가능한 형식에 의한 정보제공이 불충분하고,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접근성 부족;
- (b) 읽기 쉬운/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통한, 그리고 기타 접근 형식,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요건을 포함하는 데 다다르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4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모든 장애인을 위해 점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수어, 읽기 쉬운 자료, 평이한 언어,

오디오 설명, 자막과 같이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텔레비전과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러한 방식의 개발, 증진, 사용을 위해 적절한 재정을 할당하며, 장애인의 다양성에 적합한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을 보장할 것;

- (b) 읽기쉬운/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그 외 접근 형식, 방법과 수단을 통해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침이 포함된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것;

## 16) 사생활 존중(22조)

45. 위원회는 실종예방 목적의 GPS추적장치가 지적·자폐성·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정보가 제공된 자유로운 동의 없이 발부돼,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시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장애인, 특히 자폐성장아인, 지적장애인, 사회심리장애인, 신경다발성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GPS추적장치를 당사자의 동의 하에 발부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
- (b)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되게 실종예방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17)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제23조)

4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한다:

- (a) 후견제도 하에 있는 장애인의, 특히 장애여성과 심리사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의 가족, 부모됨, 친족관계에 관한 권리를 당사국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부족함;
- (b) 장애아동과 그 가족, 장애가 있는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 부족.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장애여성, 지적 또는 심리사회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의 책임을 다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당사국의 법률을 개정할 것;
- (b) 장애인 가족이 가족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할 것.

## 18) 교육(제24조)

49.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 (a) 당사국이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여전히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자폐성, 지적, 심리사회적 또는 중복 장애를 포함하는 장애 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점;
-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 교육을 받은 교사 수와 지원인력의 수그리고 통합교육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미약함;
-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

50. 통합교육에 관한 일반논평 제4호(2016년)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4.5를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PD/C/KOR/CO/1, para. 46)를 다시금 언급하고 당사국에 촉구한다.

- (a) 교육 욕구와 필요한 편의제공에 대한 개별화 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단계의 주류 교육에서 통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
- (b) 장애학생에게 포괄적인 디지털 접근과 같은 대체가 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서 보조기구 및 학습자료, 그리고 읽기쉬운 자료, 의사소통 보조장치, 보완적 정보 통신기술을 포함한 의사소통 방식과 수단을 제공할 것;
- (c)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적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보장할 것;

## 19) 건강(제25조)

51. 위원회는, 상법 제732조가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한해 생명보험 계약을 인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 상에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임신, 출산, 모성에 한정되어 있는 점이 우려된다.

52. 협약 제25조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3.7, 3.8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PD/C/KOR/CO/1, para. 47)를 반복하며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a) 상법 제732조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서 성적 및 재생산 건강 관리와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
- (b) 건강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 조치,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과 심리사회적장애인, 장애여성과 여아를 위해 점자, 수어, 읽기쉬운 자료를 포함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 20) 가활 및 재활 (제26조)

53. 위원회는 사회보장 및 사회 복지 지원을 당사국의 국민 외에 장기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없는 장애인은 의료와 재활 치료, 직업 훈련 및 활동지원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활과 재활 체계를 확대할 것과 장애인의 국적과 체류 상태와 상관없이 각자의 필요에 기초하여 가활과 재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21) 노동 및 고용(제27조)

5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 (a) 지적 그리고/또는 심리사회적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차별적 법률;
- (b) 「최저임금법」이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음;
- (c)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분리된 채 있고, 장애노동자들을 보호작업장에서 개방 노동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옮기려는 명확한 계획이 부재함.

56. 위원회는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22)를 상기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8.5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장애인을 개방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 특히 채용 광고, 채용 절차, 정당한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 그 밖의 노동 및 고용과 관련한 권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 (b) 「최저임금법」을 재검토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
- (c) 장애인, 특히 탈시설 과정에 있는 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이 개방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과 고용, 그리고 통합적 노동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d)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으로부터 개방되고 통합적이며 접근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장애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할당제를 특별히 포함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화된 적극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

## 22)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28조)

57.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을 주목한다:

- (a) 장애 소득 및 사회보장정책 하에 당사국에서 높은 생계비용을 보전할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액수가 불충분함;

- (b)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연금제도에서 아직도 배제된 장애인들이 존재함;
- (c) 장애등록 완료 후에도, 장애인연금과 같은 핵심적 지원에 있어, 이주장애인은 수급자격이 아님.

58. 장애상태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통합증진과 역량강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0.2와 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간의 연계성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장애인의 사회보장 및 빈곤 경감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단체들과의 논의 하에 장애수당 액수를 검토할 것;
- (b) 장애인연금제도의 수급자격을 확대, 특히 부양의무자 요건의 완전폐지를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도록 보장할 것;
- (c) 장애이주민과 장애인민이 기초생활보장 이나 장애수당 등과 같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

### 23)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29조)

59.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 (a) 의학적 치료를 받으며, 구금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선거과정에서 배제하는 치료감호법에서의 차별적 규정;
- (b) 농민, 지적/심리사회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장애인여성을 포함한 소외된 장애인의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 보장을 위한 조치의 부족;
- (c) 공공선거토론, 선거프로그램 및 온라인/인쇄 선거자료를 포함한 선거정보에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투표소, 투표절차,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장애인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점.

60.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선거과정과 정치적, 공적생활에서 장애인 권리를 부정하는 모든 차별적 규정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
- (b) 선출된 대표 자격을 포함해, 농인, 지적/심리사회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장애여성 등 소외된 장애인 그룹들의 평등과 참여를 보장하고, 입후보한 장애후보자, 특히 소수정당에 입후보한 장애후보자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
- (c) 선거와 투표절차, 시설, 온라인/인쇄 선거자료들이 평이한 언어, 읽기 쉬운 자료로 접근 가능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이런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24)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제30조)

61. 위원회는 ‘맹인, 시각장애인과 다른 읽기 장애인의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마라케시조약’의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과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의 문화 생활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그리고 스포츠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부족함을 우려한다.

62. 위원회는 당사국이 마라케시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C. 구체적 의무 (제31~33조)

## 25) 통계와 자료 수집 (제31조)

63. 위원회는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마주하는 장벽에 대한 분리된 데이터의 수집과 공개적인 보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64. 위원회는 ‘장애에 관한 워싱턴그룹 간이질문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의 장애인의 포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마커’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지위,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 별로 분리된 장애인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절차를 신속하게 개발할 것. 시스템과 절차는 장애인의 비밀유지와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함;
- (b) 장애인의 권리 이행을 막는 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 할 예산을 할당할 것. 당사국은 장애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구축할 것;
- (c)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 장애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알릴 수 있도록 양적 및 질적 방법을 아우르는 독립적이고 참여적인 연구를 지원할 것.

## 26) 국제협력 (제32조)

65. 위원회는 개발협력 노력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적절한 메커니즘이 부족한 것과 개발협력 동반자로서 장애인단체, 특히 장애여성단체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66. 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다루는 지역단위의 프레임워크로서 인천전략을 포함한 국제협력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개발과 이행의 전 과정에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하도록 권고한다.

## 27)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제33조)

67.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 (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1년에 0~3회 회의하는 것에서 그치며, 이는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b)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가 2021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재승인시 권고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와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이행 진전이 부족함.

6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횟수를 늘릴 것;
- (b)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의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인적자원을 강화할 것.

## IV. 사후조치

### 28) 정보의 배포

69.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에 협약 제6조와 제19조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청한다.

70.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국은 정부와 국회 관계자, 관련 부처 공무원,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 관련 직군 구성원,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하는 미디어에게 본 최종견해를 전달하여 이를 고려하고 조치하도록 권고한다.

71.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기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를 수어를 포함한 자국어와 소수자 언어로, 또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의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민간단체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널리 배포하고, 이를 인권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 29) 다음 정기 보고

73. 당사국은 정기보고와 관련하여 간소화된 보고 절차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보고 전쟁점목록을 작성하고 당사국이 전쟁점목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2031년 1월 11일까지 제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국의 답변은 제4-6차 병합 정기보고가 될 것이다.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tr.: General  
9 September 2022  
ADVANCE UNEDITED VERSION

Original: English

---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sup>4)</sup>\*

#### I. Introduction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 of Republic of Korea at its 598<sup>th</sup> and 599<sup>th</sup> meetings, held on 24 and 25 August 2022. It adopted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t its 614<sup>th</sup> meeting, held on 5 September 2022.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 of Republic of Korea, which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reporting guidelines, and thanks the State party for its written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prepared by the Committee.

3.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fruitful and sincere dialogue held with the State party's delegation, which was diverse and multisectoral and which included representatives of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 II.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welcomes the legislative measures taken to promot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the following:

(a)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25(e) of the Convention, entered in 2008 at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in December 2021;

(b) The adoption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hich recognizes the Korean Sign Language as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in the State party, in 2016;

(c) The adoption of the Braille Act, stipulating that Braille is a set of letters used in the State party along with Hangeul and has the same status, in 2017;

(d) The adoption of the Act of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18;

(e) The adoption of the Roadmap to Support Independent Living of

---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twenty-seventh session (15 August-9 September 2022).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21.

### III.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 A. General principles and obligations (arts. 1-4)

5.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 Disabilit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including the revised definitions of disability i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not yet been fully brought in line with the Convention, and fails to identify the specific needs of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deafblind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HIV/AIDS;

(b) 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 is still prevalent in the State party, including within the disability classification system, despite the recent revision of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and the reduction from 6 to 2 grades, which has a negative impact by preventing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and limiting their access to appropriate services and support;

(c) The lack of awareness among policymakers, judges, prosecutors, teachers, and medical, health and other professionals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bout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nvention.

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view the existing national disabilit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to align them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adopt a concept of disability that covers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persons with psychosocial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persons who are deafblind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HIV/AIDS and ensure that their characteristics and needs are recognized;**

(b) **Reorient its disability assessment systems by replacing elements of 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 with principles of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and by establishing systems aimed at the assessment of leg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vision of the necessary support and assistance to promote the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ull social inclusion;**

(c) **With the clos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 capacity-building programmes for public policymakers, judges, prosecutors, teachers, and medical, health and other professionals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party under the Convention;**

7.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yet ratifi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8.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divers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concerning disability-related laws, policies and programmes.

10.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7 (2018) on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rengthen and implement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ensure that meaningful consultations are held with the whole range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or psychosocial disabilities, intersex persons with disabilities, women with disabilities, refugees and migrants with disabilities, autistic persons,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gender divers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requiring higher levels of support.

## **B. Specific rights (arts. 5-30)**

###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t. 5)**

11. The Committee observes with concern:

(a) That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does not recognize multiple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women with disabilities, migrants with disabilities, LBGTI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IV infected persons with disabilities;

(b) The fact that the amended article 1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clude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from the univers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c) The lack of recognition of the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s a form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ll areas of life;

(d)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including attorney fees, which limits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2.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6 (2018) and targets 10.2 and 10.3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view the existing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nd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o recognize multiple and intersectional forms of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and its intersection with other grounds, such as age, sex, race, ethnicity,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status, and adopt strategies to eliminate multiple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b) Review Article 1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ine with the Convention, to include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n the univers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c) Exemp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lose a case abou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being burdened with the opposing party's attorney's fees and ensure accessible and fair reimbursement schemes in order to prevent any additional costs or administrative burde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 Recognize the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and ensure effective investigation of reports of such discrimination.**

**Women with disabilities (art. 6)**

13.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lack of the inclusion of a gender perspective in the disabilit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as well as the lack of a disability perspective in gender-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which leads to further discrimination, marginalization and exclus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b) The lack of gender-sensitive budgeting based on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activitie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c) That the national legislative framework does not explicitly address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absence of data and research carried out on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faced by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with a view to designing adequate policy responses;

(d) The lack of empowerment programm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employment,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in decision-making and in the judiciary.

14.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3 (2016) o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Goal 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Mainstream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to all gender legislation, and mainstream a gender perspective in disability policies and programmes, in particular the Third Gender Equality Master Plan (2023 - 2028) and disability agenda, while ensuring consultation with and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gender- and disability-related policies and programmes;**

**(b)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any programs and activities related to general disability issues are planned and budgeted based on the gender equality perspective;**

**(c) Recognize in its legislation multiple and intersectiona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adopt specific legislation and strategies that reflect a gender perspective and intersectionality;**

**(d) Adopt measures aimed at achieving the empowerment and full inclus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all spheres of life, as well as their involvement in all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State party should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represented in political life in decision-making roles, including in government bodies and the judiciary.**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t. 7)**

15. The Committee observes with concern:

(a) The absence of mechanisms to consult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enable them to express their views in all matters

concerning them;

(b) The lack of access to general community-based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 That only 0.03 per cent of playgrounds are inclusive, which results in discrimin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events them from enjoying their right to pla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16. With reference to the joint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2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stablish a mechanism that respects the evolving capac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nsure that they can form their views and express them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nd that these views are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child's age and maturity;**

**(b) Implement a policy on inclus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ll areas of life, including family life and community life, by developing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m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 Review the Children's Play Facility Safety Management Act to ensure that playgrounds are inclusive and accessible for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 **Awareness-raising (art. 8)**

1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a) The lack of awareness-raising campaigns about the dignity, abilities and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and in the media and the absence of long term strategy for raising awareness abou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The persistence of discriminatory attitudes, negative stereotypes, prejudices, widespread hate and demeaning expressions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utistic persons,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n political discourse and on social media.

**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dopt a national strategy, in close consultation with and with th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aise awareness of and combat prejudic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onitor its impact;**

**(b) Introduce regular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modules abou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all levels of education, for policymakers, the judiciar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media, the politicians, educators,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for the general public, in all accessible formats and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foster respect for the dignity, abilities and contributions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 **Accessibility (art. 9)**

19.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at despite the recent amendment to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re are still some exemptions related to the size of buildings and year of construction, which continues to prevent full accessibility of public buildings;

(b) The lack of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full range of accessibility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lack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systems;

(c) That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to improve special needs of transportation in January 2022 excludes inter-city buses, express buses and wide-area buses and the insufficient provision of information, including bus number and route as well as on-board guidance, impeding the use of buses by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disabilities;

(d) The barriers in the digital work environment that prevent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s the obligation to guarantee accessibility is limited to national and public institutions.

**20. With reference to its general comment No. 2 (2014) on accessibility and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9 and targets 11.2 and 11.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mend the national legislation to include mandatory rules in ensuring accessibility of all buildings and structures, regardless of their size, capacity and date of construction;**

**(b) Adopt a national accessibility strategy that includes all areas described in the Convention, and strengthen its mechanisms for monitoring accessibility at the municipal level, including by establishing a system of sanctions for non-compliance;**

**(c) Increase the number of wheelchair-accessible buses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inter-city buses, express buses and wide-area buses, and ensure information including bus numbers and routes as well as on-board guidance are in accessible formats; improve the environment and public space to make them safe and accessible for persons with different disabilities;**

**(d) Ensure universal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for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both in educational facilities and at home, in public and private websites and mobile applications.**

#### **Right to life (art. 10)**

21.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bout:

(a) The high rate of suicide and disappearances among autistic person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s well as cases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killing their children before committing suicide;

(b) The death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al settings, particular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dopt and implement a national suicide and disappearances prevention strateg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specific measures to target autistic person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 families, and to ensure close consultation and activ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b) Develop measures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s, to initiate emergency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safe and independent living in the community and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in critical health situations.**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art. 11)**

23. The Committee is concerned:

(a) That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of 2018 lacks disaster risk reduction plans, policies and protocols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risk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 At the low level of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 - 2030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Goal 7 of the 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at the national level and in its reporting process.

2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ccelerate adoption of inclusive and accessible disaster risk reduction plans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children, women,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sensory impairments;**

**(b) Closely consul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l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nd at all stages of the process, and adopt a comprehensive strategy, in accordanc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1 and 13.**

2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those who are still in institutions, and at the barriers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gaining access to emergency information and devices.

2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uided by the guidance and policy brief on a disability-inclusiv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 Mainstream disability in its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plans, including in respect of ensuring equal access to vaccines, and other economic and social programmes to tackle the negative impact of the pandemic;**

**(b) Adopt measures to deinstitutionaliz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imes of emergency and to provide them with appropriate support to live in the community;**

**(c)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t all stage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plans;**

**(d) Ensure that in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receive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and on the appropriate devices.**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rt. 12)**

27.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lack of progress made to abolish the guardianship and substituted decision-making regime, limiting the active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basis of psychosocial and/or intellectual impairment, and at the lack of a timeframe to completely replace this regime with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supported decision-making in accessible formats to increase understand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28.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RPD/C/KOR/CO/1, para. 22) and recommends that in line with its general comment No. 1 (2014) on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the State party:**

**(a) Replace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s, including guardianships and wardships, with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s, which ensures the provision of individualized support and respects the autonomy, will and preferen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Ensure the effective, independent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reform process and in the training of the relevant personnel on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n the mechanism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c) Organize and fu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bout what supported decision making is, in accessible formats such as Braille, sign language and Easy Read and distribut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ccess to justice (art. 13)**

2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continued existence of restrictions that interfere with the full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footing with others.

30. **The Committee refers to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RPD/C/KOR/CO/1, para. 24), recalls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pared in 2020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arget 16.3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dop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 action plan on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necessary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to eliminate all restrictions on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stages of the judicial process;**

**(b) Make procedural adjustmen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individualized assistance,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participate effectively in the various aspects of legal proceedings;**

**(c) Develop alternative and augmentative mea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use throughout legal proceedings, such as Braille, sign language, Easy Read and audio and video transcription, apply the principle of universal design and adopt an action plan to ensure physical access to all justice facilities, including through accessible transportation;**

**(d) Intensify efforts to provide training on the Convention to justice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e)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enter the legal profession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ensure individualized support for that purpos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rt. 14)**

31.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those with psychosocial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still subjected to laws that deprive them of their liberty on the basis of impairment, and that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to ensure that those persons are not subjected to arbitrary treatment, including confinement.

32. The Committee recalls it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peal all relevant legislative provisions, including the provisions of Korean Civil Act on Adult Guardianship and the Act on Mental Health Promotion and Welfare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llowing for the involuntary deprivation of liberty on the grounds of impairment and perceived dangerousness to themselves or others, introduce legislation that ensures non-discrimination through, for example, procedural accommo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during interrogation and detention, explicitly prohibit the forced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ground of impairment, and restore the rights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b) Establish a monitoring mechanism to ensure that persons with psychosocial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not subjected to arbitrary and forced treatment, particularly treatment that results in confinement.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 15)**

33.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continuous occurrence of seclusion, psychical, chemical and mechanical restraints and other forms of ill-treatment in family settings, psychiatric institutions, hospitals, prisons and educational services, particularly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34.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immediately put an end to the use of psychotropic medications, physical restraints and:

(a) Adopt the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all settings, including in justice, education, health, psychosocial and aged care facilities. It further recommends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ffectively consulted and involved in this process;

(b) Ensure that the complaint procedure is accessible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still in institutions, and investigate and sanction perpetrators of practices that may amount to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osing sanctions proportional to the conduct.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rt. 16)**

35.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lack of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and

particularly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bout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nd the lack of a comprehensive strategy against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settings, including in the family, at school and in the workplace;

(b)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exposed to higher rates of violence than other children and about the limite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statistical data regar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lated complaints;

(c) The lack of accessible shelters for women and girls who are victims of violence, including women with psychosocial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d) Inadequate training of the staff, carers and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alth personnel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recognize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3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all necessary steps to raise awareness about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nd adopt 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event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targe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persons with psychosocial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hose who are institutionalized, and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information about how to avoid, recognize and report cases an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victims of exploitation, violence or abuse have access to independent complaint mechanisms and appropriate remedies, such as redress and adequate compensation, including rehabilitation;**

**(b) Develop and implement a plan of action to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ithin and outside of institutions and collect disaggregated data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c) Ensure that services fo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victims of gender based violence, including support centres and emergency shelters, are accessible and the required support if provided;**

**(d) Provide continuous training for the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for their caregivers, health professional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to enable them to recognize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nd to better communicate and work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victims of violence.**

#### **Protection of the integrity of the person (art. 17)**

37.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despite legal provisions prohibiting forced sterilizat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the practice still persists.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investigations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on this matter.

38.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measures to eradicate the practice of forced sterilizat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those living in institutions and the non-consensual interruption of pregnancie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 mechanism for identifying, investigating, and following up on any cases that, despite an explicit prohibition, continue to arise and for providing full redress in those instances, and take measures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forced sterilization.

**Liberty of movement and nationality (art. 18)**

39.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lack of efforts made to repeal provisions of article 1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deprives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he right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ir disability and of article 32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which restricts access to basic disability services for migrants with disabilities.

**4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s urgent steps to repeal discriminatory provisions in order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to allow migrants with disabilities access to basic disability services.**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41. The Committee observes with concern:

(a) The continuous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lack of efforts, including budgetary and other measures, made towards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and the provision of all necessary support services, includ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as well as the lack of awareness in society and among public authorities of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the right to choose where and with whom to live and the right not to be obliged 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b) The weak implementation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placed in existing residential institutions, the lack of programmes for resettl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or psychosocial disabilities who cannot afford housing.

**42.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5 (2017)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nd the Committee's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view the Roadmap to Support Independent Living of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bring it in line with the Convention and ensure that it includes sufficient budgetary and other measures, as well as awareness-raising activitie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right of choice and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erning their living arrangements, the right not to be obliged 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and the value of inclusion in, as opposed to segregation from, the community;**

(b)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for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those adul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still in a residential setting and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community-based services aimed at enabling persons to live independently and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art. 21)**

43. The Committee is concerned:

(a) About the insufficient provision of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an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uch as Easy Read, plain language, captioning, sign language, Braille, audio description, and tactil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eans of communicat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media outlets, and in particular on the websites that provide public information, and the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b) That the provision of Broadcast Programs Accessibl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fails to include requirement for provision of adequate accessible information through easy-to-read/easy-to-understand content and through other access formats,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4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the accessibility of all public information, including television and media services,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essible communication formats such as Braille, deafblind interpretation, sign language, Easy Read, plain language, audio description, captioning and subtitles by allocating adequate funding for its development, promotion and use, and ensure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ppropriate for th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Review the Guidelines on the Provision of Broadcast Programs Accessibl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include standards on providing adequate accessible information through Easy-to-Read/Easy-to-Understand content and through other access formats,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Respect for privacy (art. 22)**

45. The Committee observes with concern that in order to prevent disappearances GPS tracking devices are being issued to autistic persons,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or psychosocial disabilities without their free and informed consent, violating their right to privacy.

4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measures to respect the priva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autistic persons,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neurodivergent persons, and to ensure that GPS tracking devices are issued based on their consent;**

(b)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policies to prevent disappearances, which are in line with the Convention and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 (art. 23)**

4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a) The lack of express recognition in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of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laced under guardianship, with respect to family, parenthood, and relationships;

(b) The lack of sufficient support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nd parents with disabilities to carry out their parental responsibilities.

4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mend its legislation to explicitly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women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or psychosocial disabilities, to marry, found a family and exercise parental responsi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b) Adopt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to ensure effective support for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aise their children in a family setting.**

#### **Education (art. 24)**

4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 That the State party maintains special education based on medical impairment-based approach and regularly increases the number of special schools which results in a high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utism, intellectual, psychosocial or multiple disabilities, who are still receiving segregated special education;

(b) About the insufficient number of teaching and support staff trained in Braille, sign language and accessible mode of teaching and the level of training for teachers on skills and competencies required to promote inclusive education;

(c)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ttend the day care centres other than kindergarten do not receive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50.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4 (2016) on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and target 4.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RPD/C/KOR/CO/1, para. 46)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a) Formulate a comprehensive inclusive education policy with strategies to promoting a culture of inclusion in mainstream education at all educational levels, including individualized human-rights based assessments of educational requirements and necessary accommodation, and provide appropriate training for teachers and non-teaching education personnel on inclusive education;**

**(b) Provide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 assistive compensatory aids and learning materials in alternative and accessible formats, such as inclusive digital acces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including Easy Read, communication aids, and assistive and information technology;**

**(c)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tending segregated day-care centres operated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e transferred to mainstream kindergarten operating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 **Health (art. 25)**

51.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recognizes life insurance contra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ly if the person “possesses mental capacity”, which constitutes a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also concerned that under the Act on the Right to Health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omen’s right to health is limi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maternity.

**52. Taking into account the links between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and targets 3.7 and 3.8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RPD/C/KOR/CO/1, para. 47)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peal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and develop and**



implement specific programs on different aspects of women's right to health, including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and services and mental health services;

(b) **Develop training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on their skills, support measure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ans and methods, and provide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including Braille, sign language and Easy Rea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art. 26)**

53.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upport are only available, in addition to the State party's citizens, to long-term residents and non-nationals married to a Korean citizen, and requires a registration as a person with disability, which excludes non-national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access to medical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vocational training and personal assistance.

5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and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ystems and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irrespective of their citizenship or residency status, have access to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on the basis of their individual requirements.**

#### **Work and employment (art. 27)**

55.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Discriminatory legislation that excludes or limits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or psychosocial disabilities in the labour market;

(b) That the Minimum Wage Act excludes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benefitting of the minimum wage, which resulted in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work receiving compensation below the minimum wage;

(c) The continuous segreg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heltered workshops and the lack of concrete plans to gradually move workers with disabilities from these workshops into the open labour market.

56.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8 (2022)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work and employment,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line with target 8.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Repeal all discriminatory legislation that excludes or limits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open labour market and adopt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work, as well as measures to combat discrimination particularly in relation to advertisements, recruitment processes, reasonable accommodation, retraining, promotion, and other rights related to work and employment;**

(b) **Review the Minimum Wage Act to ensure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and provide compens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excluded from the benefit of the Act;**

(c) **Strengthen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work and employment in the open labour market and to inclusive work environment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aking part in**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and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d) **Implement measures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ransition from sheltered employment into open, inclusive and accessible employment and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pecific affirmative action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quotas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open labour market.**

####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art. 28)**

57.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inadequacy of the amount provided as disability allowance and disability pension to cover the high cost of living in the State party under the disability income and social security policy.

(b) That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till excluded from the pension system even after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had been abolished.

(c) The non-eligibility of migrants with disabilities to receive essential support such as disability pension even after completing disability registration.

58. **Recalling the links between article 28 of the Convention and target 10.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ich seek to empower and to promote the economic inclusion of all persons, irrespective of disability statu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Strengthen the social protection and poverty reduction sche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view the amount of disability allowance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Expand the eligibility for the Disability Pension System, particularly by completely abolishing the obligatory provider requirements, to ensure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benefit from the disability pension;**

(c) **Take immediate steps to ensure migrants and refugees living with disabilities can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upports, such as basic living security or disability benefits.**

####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rt. 29)**

59.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discriminatory provisions of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ex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undergoing medical treatment and are in detention facilities from the election process;

(b) The lack of measures taken to ensure the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deaf persons,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or psychosocial disabilities, deafblind persons and women with disabilities, who are underrepresented;

(c) The lack of accessibility to polling stations, voting procedures, facilities and materials, as well as to information about elections, including public electoral debates, electoral programmes, and online or printed election materials, all of which limits the effe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6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peal all discriminatory provisions deny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nsure their full participation in electoral process and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b) Introduce specific measures to ensure equality and participation of underrepresented 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deaf persons,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or psychosocial disabilities, deafblind persons, and wom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s elected representatives, and to support candidates with disabilities to stand for elections, particularly those standing for minority political parties;

(c) Guarantee that electoral and voting procedures, facilities, and online or printed election materials are accessible in plain language and Easy Read, thereby facilitating their use b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art. 30)**

61.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specific measures put in place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Disabled and the insufficient measures taken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6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arrakesh Treaty through close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its effort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children with disabilities, enjoy their right to participate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 **C. Specific obligations (arts. 31–33)**

####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art. 31)**

63.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consistent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collection and public reporting of disaggregated data on the barriers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xercising their rights.

64. The Committee recalls the Washington Group short set of questions on disability and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olicy marker on the inclusion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xpediently develop a system and procedures for collecting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ggregated by age,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race, ethnicity, income, migration status, level of education, employment situation and place of residence. The system and procedures should ensure confidentiality and respect the priva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Allocate funds to undertake periodic research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e aim of identifying barriers to their implementation. The State party should build the capacity of municipal authorities to conduct periodic research on barriers to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 Support independent and participatory researc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o inform the disability-related policies and measures taken for ensur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 32)**

65.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lack of appropriate mechanisms to measure the impa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effectiv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organization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s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

**6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 effectively consulted and involved at all stages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s, programmes and projects, including the Incheon strategy as the regional framework addres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rt. 33)**

67.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at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Subcommittee meets only between 0 and 3 times a year, which is not sufficient to ensure effective coordination of disabilities policies;

(b) About the lack of progress made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of the GANHRI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SCA) made in 2021 during the re-accredit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HRCK), to establish a 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 and to ensure its financial autonomy.

**6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ntensify the meeting cycle of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Subcommittee to ensure the effective coordination of the disabilities policies;**

(b)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GANHRI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SCA) to establish a 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 and to ensure its financial autonomy, and strengthen its human resourc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unctions effectively and independently and discharges its mandate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 **IV. Follow-up**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69. The Committe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ll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With regard to urgent measures that must be taken, the Committee would like to draw the State party's attention to the recommendations falling under articles 6 and 19 of the Convention.

70.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ransmi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or consideration and action to

members of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officials in relevant ministries, local authorities and members of relevant professional groups, such as education, medical and legal professionals, as well as to the media, using modern social communication strategies.

71. The Committee strongly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invol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articula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eparation of its periodic report.

72.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disseminate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widely, including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national and minority languages, including sign language, and in accessible formats, including Easy Read, and to make them available on the government website on human rights.

#### Next periodic report

73. The State party has opted to report under the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regarding its periodic reports. The Committee will prepare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and request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replies within one year upon receipt of the list of issues. The replies of the State party, expected by 11 January 2031 will constitute its combined fourth to sixth periodic reports.

---